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0. 3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가.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(대통령령)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였던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마련[별표1]

| 구 분 | 총 계 | 일반직 | 기능직·고용직 | 별정직·정무직 |
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현재정원 | 583 | 481 | 85 | 17 |
| 현재비율 | 100% | 82.5% | 14.6% | 2.9% |
| 대통령령 | 100% | 80% 이상 | 18% 이내 | 2% 이내 |
| 개정(안) | 100% | 80%이상 | 17% 이내 | 3% 이내 |
| 증 감 | | | △1% | +1% |

-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 정원 포함
- 기존 대통령령의 기준비율에서 기능직·고용직 비율을 1% 감하고, 현 정원에 맞게 별정직·정무직 비율 1% 상향 조정함.

나.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마련 [별표2]의 1번

- 일반직의 직급별 비율은 기존 대통령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

다.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마련 [별표2]의 2번

| 구 분 | 총계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10급 |
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현재정원 | 85 | 2 | 7 | 13 | 27 | 36 |
| 현재비율 | 100% | 2.3% | 8.2% | 15.3% | 31.8% | 42.4% |
| 대통령령 | 100% | 3% 이내 | 9% 이내 | 16% 이내 | 32% 이내 | 40% 이상 |
| 개정(안) | 100% | 5% 이내 | 15% 이내 | 23% 이내 | 33% 이내 | 24% 이상 |
| 증 감 | | +2% | +6% | +7% | +1% | -16% |

- 기능10급의 비율을 16% 감하여 기능6급 2%, 기능7급 6%, 기능8급 7%, 기능9급 1%로 상위직급 비율을 상향 조정함.
- 총 14개(기능6급 2, 기능7급 5, 기능8급 6, 기능9급 1)의 상위 직급 정원 증가하여 총 18명 승진 예상되고,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 추계치는 약 39백만원(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)
 - * 조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능직의 근속승진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일반승진자는 예상수치보다 적을 수 있음.

라. 연구·지도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마련 [별표2]의 3번

| 구 분 | 연구직 | | 지도직 |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연구관 | 연구사 | 지도관 | 지도사 |
| 현재정원 | - | 1명 | 1명 | 19명 |
| 현재비율 | - | 100% | 5% | 95% |
| 대통령령 | 3% 이내 | 97% 이상 | 8% 이내 | 92% 이내 |
| 개정(안) | - | 100% | 5% 이내 | 95% 이내 |
| 증 감 | △3% | +3% | △3% | +3% |

- 연구관 정원 3%을 감하고, 현정원에 맞게 연구사 비율 100% 책정
- 지도관 정원을 3% 감하고, 현정원에 맞게 지도관 5%이내, 지도사 95%이내 책정
- 『공공기록관리법』에 따라 기록연구사 정원 확보(연구사 정원 + 1)
⇒ 기능직 정원 △1

마.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마련 [별표2]의 4번

| 구분 | 총계 | 5급상당 | 6급상당 | 7급상당 | 8급상당 | 9급상당 |
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현재정원 | 16명 | - | 15명 | 1명 | - | - |
| 현재비율 | 100% | - | 93.75% | 6.25% | - | - |
| 대통령령 | 100% | 7% 이내 | 50%이내 | 29%이내 | 12%이내 | 2%이상 |
| 개정(안) | 100% | - | 100% | - | - | - |
| 증감 | - | △7% | +50% | △29% | △12% | △2% |

- 정원에 없는 5급상당, 8급상당, 9급상당의 비율은 모두 감하고, 7급상당의 29%이내를 감하여 6급 상당 비율 100% 책정
- 7급상당 현원 1명 승진 가능

3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
-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기간 : 2009.12.18 ~ 2010.01.07(20일간) 제출의견 있음
입법예고결과 요약서 : 붙임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 및 제25조,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583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71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| 일 반 직 | 기능직 · 고용직 | 별정직 · 정무직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비 율 | 80% 이상 | 17% 이내 | 3% 이내 |

비 고 :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·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 · 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| 구 분 | 4급 이상 | 5급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비 율 | 1%이내 | 6%이내 | 27%이내 | 31%이내 | 24%이내 | 11%이상 |

비 고 : 1.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기능직공무원

| 구 분 | 6급 | 7급 | 8급 | 9급 | 10급 |
|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비 율 | 5%이내 | 15%이내 | 23%이내 | 33%이내 | 24%이상 |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| 구 분 | 연구직 | | 지도직 | |
|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
| | 연구관 | 연구사 | 지도관 | 지도사 |
| 비 율 | - | 100% | 5% 이내 | 95% 이내 |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4. 별정직공무원

| 구 분 | 4급상당 이상 | 5급상당 | 6급상당 | 7급상당 | 8급상당 | 9급상당 |
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비 율 | | | 100% | | | |

비 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관련)

| 기관별 직급별 | 총 계 | 본 청 | 의회사무과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 · 면 |
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|
| 총 계 | 583 | | | 583 | | |
| 정무직 계 | 1 | | | 1 | | |
| 군 수 | 1 | 1 | | | | |
| 일반직 계 | 460 | | | 460 | | |
| 4급 | 2 | 1 | | 1 | | |
| 4~5급 | 2 | 2 | | | | |
| 5급 | 24 | 9 | 2 | 4 | 1 | 8 |
| 6급 이하 | 432 | | | 432 | | |
| 연구직 계 | 2 | | | 2 | | |
| 연구관 | | | | | | |
| 연구사 | 2 | | | 2 | | |
| 지도직 계 | 20 | | | 20 | | |
| 지도관 | 1 | | | 1 | | |
| 지도사 | 19 | | | 19 | | |
| 별정직 계 | 16 | | | 16 | | |
| 6급상당 이하 | 16 | | | 16 | | |
| 기능직 계 | 84 | | | 84 | | |
| 기능6급 이하 | 84 | | | 84 | | |

관계 법령 발췌

④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7.3>

②~④(생략)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5조(별정직 정원)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, 미리 각 직무분야별·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,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7.3>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7.3>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 · 도의 5급 이하(시 · 군 · 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7.3>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 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의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(생략)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| | |
|------|---|
| 의견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일반직에 비해 하위직급으로의 쏠림이 너무 심하고, 근속승진이 아니면 승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.○ 인근 시 지역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율을 유사하게 개정함.○ 기능직도 상위직급의 비율을 현 비율보다 증가시켜 달라는 의견 |
| 검토의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재직기간 비교 : 기능직 하위직급 근속기간 장기 소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현직급 평균 근속기간 : 기능10급 6년2월, 일반직 9급 3년5월- 최초임용 평균 재직기간 : 기능9급 12년, 일반직 8급 6년○ 근속승진율 : 평균 74.4%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능9급 근속승진율 : 83.3% (6년소요)- 기능8급 근속승진율 : 86.7% (7년소요)- 기능7급 근속승진율 : 53.3% (8년소요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일반직 근속승진율 18.3%○ 최초임용 및 현직급 재직기간, 근속승진율 등을 고려하되, 일반직의 상위직급 비율 상향조정이 고려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정원기준 상위직급 6명 책정안을 재검토하여 정원기준 상위직급 14명으로 조정 반영하여 기능직의 승진 적체 일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. |
| 반영여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위와 같은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의견 반영함. |